

#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수정 1 차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98,340,639	20,950,219
일반회계	597,494,109	17,924,823
특별회계	100,846,530	3,025,396
공기업특별회계	46,085,553	1,382,56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6,085,553	1,382,567
기타특별회계	54,760,977	1,642,8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153,650	334,610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특별회계	3,743,339	112,3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56,225	121,687
수질개선특별회계	11,380	341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238,377	97,15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010,000	30,300
주택사업특별회계	1,688,954	50,669
농공단지특별회계	1,184,885	35,547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2,460,177	73,80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079,746	92,39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50,000	4,5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737,863	262,136
도시개발특별회계	14,246,381	427,3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0,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79,86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2. 지방채 상환금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

제 6 조 총액인건비제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할 경우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